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일, 김예지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8.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4. 8.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¹⁾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²⁾를 명시하여, 장애인이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혹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근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임.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총 694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1,517명의 비장애인과 16,093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한편,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기 위하여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포함)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가 설치·위탁한 기관이며(현재 전국 160개소 운영 중),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지사가 도 내 시·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시·군 간 운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치·위탁한 기관임(현재 전국 8개소 운영 중).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